

학교법인 동서학원

2019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8 인	2 인
재적이사	8 인	2 인
참석이사	8 인	1 인

1. 일 시 : 2019년 9월 27일(금), 오후2:00~3:15,

(회의소집 통보일: 2019년 9월 19일)

2. 장 소 : 법인 회의실

3. 임원 출·결 사항

가. 참석임원

- 이사(8명) : 박동순, 임효진, 장제국, 추만석, 양상백, 오병태, 이순걸, 강정호
- 감사(1명) : 양한석

나. 결석임원

- 이사(0명) :
- 감사(1명) : 문승엽

4. 회의안건

(1) 심의 안건

1) 법인 정관변경(안) 심의 건

2) 동서대학교

- ①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 건
- ② 기자재 폐기 승인 심의 건
- ③ 전임교원 새로임용 및 승진임용(정년포함) 심의 건
- ④ 교원인사규정, 직원인사규정 개정(안) 심의 건

3) 부산디지털 수당규정 개정(안) 심의 건

4) 사상구노인복지관

- ① 사상구노인복지관 본관 및 다누리노인주간보호센터의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 건
- ② 사상구노인복지관 분관 수정사업계획(안) 및 2019년 제4차 추경추경예산(안) 심의 건
- ③ 사상구노인복지관 “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” 수행기관 신청 심의 건

(2) 보고 사항

5. 회의내용 :

- (1) 이사장은 법인 행정실장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다.
- (2) 행정실장은 재적이사 8명 중 8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.
- (3) 이사장은 성원이 되었음으로 2019학년도 제5차 법인이사회 개회를 선언한 후, 전차 회의록 보고를 행정실장에게 요청하자, 보고하고 이의 없음을 접수하다.
- (4) 이사장은 오늘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.

6. 토의 및 결의: 법인 정관변경(안) 심의 건

- (1) 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지시하고,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.

간서명 대 표	이사장	박동순	이사	양상백	이사	이순걸
------------	-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

- (2) 행정실장은 법인정관 변경(안)에 대하여 준비된 신·구조문 대비표를 이사들에게 배부하고,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“임면”을 “임용”으로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경남정보대학교 직제 변경에 따른 하부조직 변경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조교위원 추가 및 의장 선출방식 변경을 정관에 명시코자 한다고 설명하다.
- (3) 강정호이사가 정관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,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하부조직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동의를 하자, 양상백이사가 재청하니, 이순걸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가결이 되다.
- (4) 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, 법인정관 변경(안)이 불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- (5)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, 오병태이사가 이사장, 양상백,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.

7. 폐회 :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, 이순걸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1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19. 9. 27.

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

이사장 박동준

이사 임효진

이사장제국

이사 오병태

이사추만석

이사 양상백

이사강정호

이사이순걸

감사양한석

법인정관 변경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 22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)</p> <p>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</p> <p>5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<u>임면</u> 및 교직원 장계위원, 일반직원 재심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</p>	<p>제 22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)</p> <p>② -----</p> <p>5. ----- <u>임용</u> -----</p>
<u>제 1 관 임명</u>	<u>제 1 관 임용</u>
<p><u>제 34 조(임면)</u> ① 이 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<u>임면하되</u> 그 임기는 4년으 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<u>임면한다</u>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하되 정년보장 교원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대학에 두며 심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 한다.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</p>	<p><u>제 34 조(임용)</u> ① ----- ----- <u>임용하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임용한다</u>.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<생략></p> <p>④ 조교는 해당 부서장의 제청으로 당해 학교의 장이 <u>임면</u> <u>하며</u>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.</p>	<p>③<생략><좌동></p> <p>④ ----- <u>임용</u> <u>하며</u>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.</p>
<p>⑤<생략></p> <p>⑥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강사, 겸임초 빙교원 등은 당해 학교의 장이 <u>임면하며</u>,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,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⑤<생략><좌동></p> <p>⑥ ----- ----- <u>임용하며</u>, -----.</p>
<p>⑦<생략></p> <p>⑧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임면권자가</u> 교원을 <u>임면하였을</u> 때에는 <u>임면한</u>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⑦<생략><좌동></p> <p>⑧ ----- <u>임용권자가</u> --- --- <u>임용하였을</u> --- <u>임용한</u> ---.</p>
<p>제 2 관 신 분 보 장</p> <p>제 35 조(휴직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<u>임면권자는</u> 휴 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 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	<p>제 2 관 신 분 보 장</p> <p>제 35 조(휴직의 사유) ----- ----- <u>임용권자는</u> ----- -----.</p>

간서명 대 표	이사장		이사		이사	
------------	-----	--	----	--	----	--

현 행	개 정
<p>제 39 조(직위해제 및 해임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<u>임면권자는</u>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<생략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<u>임면권자는</u> 자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 <p>⑤ <u>임면권자는</u>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내기를 명한다.</p>	<p>제 39 조(직위해제 및 해임)</p> <p>① <생략><좌동></p> <p>② <u>임용권자는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<좌동> 2. <생략><좌동> <p>③ ----- <u>임용권자는</u> -----.</p> <p>④ <생략><좌동></p> <p>⑤ <u>임용권자는</u> -----.</p>
<p>제 39 조(직위해제 및 해임)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<u>임면권자는</u>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⑦ <생략></p> <p>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<u>임면권자는</u>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.</p>	<p>제 39 조(직위해제 및 해임)</p> <p>⑥ -----</p> <p><u>임용권자는</u> -----.</p> <p>⑦ <생략><좌동></p> <p>⑧ -----</p> <p><u>임용권자는</u> -----.</p>
<p>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</p> <p>제 43 조(인사위원회 기능)</p> <p>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<u>임면</u> 제청하고자 할 때의 <u>임면</u>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. 2. 강사의 <u>임면(재임용 포함)</u> 검증·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. 	<p>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</p> <p>제 43 조(인사위원회 기능)</p> <p>① -----</p> <p>1. ----- <u>임용</u> -----</p> <p>----- <u>임용</u> -----.</p> <p>2. ----- <u>임용(재임용 포함)</u> -----.</p>
<p>제 53 조의 3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 교원의 <u>임면권자가</u>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 53 조의 3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 --- <u>임용권자가</u> -----.</p>

간서명 대 표	이사장	박동수	이사	양상재	이사	이수길
------------	-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

현 행	개 정
<p>제 55 조(징계의결)</p> <p>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,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시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<u>임면권자에게</u> 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임면권자가</u>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<u>임면권자가</u>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 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>제 55 조(징계의결)</p> <p>① <좌동></p> <p>② -----</p> <p><u>임용권자에게</u> -----.</p> <p>③ <u>임용권자가</u> -----</p> <p>----- <u>임용권자가</u> -----</p> <p>----- ..</p>
<p>제 76 조(하부조직)</p> <p>① 전문대학에 교목실, 기획처, 교무처, 학생처, 취업진로처, 입시관리처, 종합행정처, 건설본부, 재무본부, 홍보실, 대외협력실, KIT사랑의봉사센터를 둔다.</p> <p>② 교목실장은 교목으로 보하며, <u>교무처장</u>, 학생처장, 취업진로처장, 입시관리처장, 건설본부장, KIT사랑의봉사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기획처장, 종합행정처장, 재무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(사무) 참사 이상으로 보하며, 홍보실장, <u>대외협력실장 및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단장은</u>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(사무)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.(16.3.28)</p>	<p>제 76 조(하부조직)</p> <p>① -----, 기획처, 대학혁신본부,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, 대학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, 대외협력실장은 -----.</p> <p>-----.</p>
<p>제 82 조(평의원회의 구성)</p> <p>① 평의원회는 <u>교원·직원</u>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교원 4인 2. 직원 3인 <u>3. <신설></u> 3. 학생 2인 4.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인</p>	<p>제 82 조(평의원회의 구성)</p> <p>① ----- 교원·직원·조교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2. ----- <u>3. 조교 1인</u> 4. ----- 5. ----- 1인</p>
<p>제 84 조(평의원회 의장 등)</p> <p>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</p> <p>② 의장은 <u>평의원</u> 중에서 정교수 직급을 가진 자 중 평의원이 복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 1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법인의 험의체 구성시 평의원회의 대표자가 된다.</p> <p>④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.</p>	<p>제 84 조(평의원회 의장 등)</p> <p>① -----.</p> <p>② -----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.</p> <p>-----.</p> <p>④ -----.</p> <p>-----.</p>

간서명 대 표	이사장	박동수	이사	양상각	이사	이승걸
------------	-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

현 행	개 정
<u><신설>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/u></p> <p>(1)(시행일) 이정관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</p> <p>(2)(조교평의원에 대한 경과조치) 제8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조교평의원은 시행 후 3개월 내 구성하고, 제85조 제2항의 보선평의원의 임기를 준용한다.</p> <p>(3)(평의원의 잔여임기 경과조치)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부터 적용하고, 시행 전 구성된 평의원은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</p> <p>(4)(평의원 의장선출 경과조치) 제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선출부터 적용하고, 시행 전 임명된 의장은 평의원회의 추인으로 호선을 갈음한다.</p>

간서명 대 표	이사장	<u>이동수</u>	이사	<u>양상재</u>	이사	<u>이수경</u>
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